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XII>

"관료사회의 뇌물 중독증"

감사원이 관료들의 습관화되다시피 한 뇌물 수수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억대에 이르는 뇌물은 물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수수하고 있는 촌지도 뇌물로 유추,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 뇌물을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뇌물의 범위를 확대해 관행화되어온 「촌지」까지도 뇌물로 간주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사회가 썩을대로 썩어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관료들의 부패행정으로 인해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시 수수하는 축의금이나 부조금까지도 신고해야 하고, 친인척이 아닌 자에게서는 이의 수수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촌지」를 방자한 「뇌물」 수수의 관행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70-80년대 또는 그 이전에도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그로 인해 사법처리된 사례는 많지만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지는 않았었다. 최소한 80년 이전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밥잠을 설친 예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관련기업들이 「촌지」라는 명목으로 「수만원」을 건네주거나 「위로주」로 접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당시에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행정처리 때문에 관청에서 날세기를 밥먹듯하는 하위급 공무원들의 처지를 타하게 여겨 「촌지」 수수를 별문제 삼지 않았었다. 물론 「촌지」수수가 정당하다거나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처지가 타하니 그 정도는 눈감아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봐주기」였던 것이다.

즉, 오늘날의 뇌물이나 촌지는 60-70년대의 그 것과는 질적으로나 근본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뇌물」이나 「촌지」를 수수하지 않고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아리몽송한 법조항을 빌미로 삼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행정행위를 지체시키거나 유기한다는 점에서 60-70년대의 촌지와는 다른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60-70년대에는 주의의 눈치를 살피면서 「촌지」를 수수하고 그 촌지로 동료들과 한잔 읊조리거나 가사에 보태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촌지」수수가 관행화되고 일반화되다 보니 눈치를 살필 것도 없고, 못받아먹는 것이 바보인 관료사회의 「후안무치」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수수한 「촌지」는 재산 늘리기에 광분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와 증권투기 등으로 사회의 몰가치화를 극도로 조장하고, 사회를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장해 화제가 되었던 「떡고물」 논쟁은 수백억원의 뇌물을 삼켜버리고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후안무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뇌물」이나 「촌지」와는 구별되는 또다른 「날강도」라고 정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떡고물」이 공업화를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특정재벌이나 특정인에게 대형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 일부를 받아 착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라돈을 나눠먹은 「날강도」의 산물이었다면, 최근의 「한보사태」는 특정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요량으로 국민일반의 저축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한, 즉 「떡고물」보다도 한층 더 악랄한 「대날강도」라 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니, 부동산투기 방지책이니, 공평과세니,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의 개혁이니 하는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허공을 맴도는 것도 그 주범들이 당사자인 까닭이며, 원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공염불 이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데 현실이다.사적이익 앞에서 국가라는 것은 생각할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원의 부정부패 방지책은 있을 수 없는 「역날강도짓」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날강도짓」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니 반발을 부를 것도 당연할 것이다. 눈치를 살피지 않는 「후안무치」가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도, 그들을 처벌하는 자도 똑같은 한 패거리라고 정의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